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8.  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(2008.5.1) 및 자체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우리구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감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감사·(민원)조사·고객만족·환경순찰 업무 등으로 한다.(안 제3조)

나. “행정관리국에 총무과·홍보과·자치행정과·문화체육과·전산정보과·민원여권과를 둔다”로 하고, “다만, 신청사 추진반은 한시기구로 한다”를 삭제 하며, 부칙에 존속기한을 2008.12.31까지로 한다(안 제4조)

- 소관사무중 “고객만족 업무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하고 “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”과 “자원봉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한다.

다. “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·지역경제과·재무과·세무1과·세무2과를 둔다.”로 한다.(안 제5조)

- 소관사무중 “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한다.

라. “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지원과·사회복지과·가정복지과·교육지원과·청소행정과·환경과를 둔다.”로 한다.(안 제6조)

- 소관사무중 “공중화장실의 설치·시설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”을 “공중화장실의 설치·시설유지 및 관리(공원내 공중화장실 제외)에 관한 사항”으로 변경하고, “자원봉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하며, 아래사무를 신설한다.

- 환경보전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  -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
  - 물 관리에 관한 사항
  -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
  - 대기오염·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  - 소음·진동·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
  -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  - 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- 마. “도시관리국에 주택과·도시계획과·건축과·도시디자인과·지적과·공원녹지과를 둔다.”로 한다.(안 제7조)
- 소관사무중 아래 사무를 삭제한다.
- 환경보전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  -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
  - 물 관리에 관한 사항
  -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
  - 대기오염·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  - 소음·진동·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
  -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  - 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- 바. 보건소장의 업무에 “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 및 식품위생·공중위생·위생업소 감시업무 등을 수행한다”를 “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 및 식품위생·공중위생·위생업소 감시업무·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·단속 등을 수행한다”로 변경한다.(안 제11조)
- 사. 식품안전추진반을 신설하여 한시기구로 운영하며, 부칙에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0.12.31까지로 한다.(안 제11조의2)
- 아. 기구재설계에 따른 관련조례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개정방식으로 개정함

### 3. 개정근거

가. 지방자치법(2008.2.29 법률 제8852호) 제112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(2008.7.3 대통령령 제20900호) 제5조 내지 제8조, 제13조 내지 제15조

다.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(2008.5.1)

### 4. 조례안 : 별첨

#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### 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08. 8. 11 ~ 8. 18)결과, 특이할 사항 없음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8.8.19)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